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안내서 우편 배달제도 시험서비스(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5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우정사업본부장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 공고

1.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가. 개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쿠폰북 등)와 광고전단지 등을 우편물화하여 우체국 또는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우체국에 접수하여 아파트 지역으로 배달하는 서비스

나. 접수 및 배달관서 : 전국 5급 이상 우체국(직접 배달할 우체국)

다. 대상우편물

- 1) 카탈로그, 쿠폰북, 대형마트 세일, 아파트 분양, 학원안내 등을 선전하거나 광고하는 우편물로서 “아파트 지역”에 한하여 배달하는 일반통상우편물
- 2) 단, 인사장, 안내장, 명함, 지로용지, 문서 등 인사말 또는 안내문 성격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은 대상 우편물에서 제외

- 3) 수취인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우편물(예 : 세대주님)
- 4) 상품안내서 우편물의 1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음
- 5) 동일 발송인이 총괄국 3국을 하나의 접수권역으로 1회 총 접수물량이 5,000통 이상(자국접수 자국배달)

< 우편물 표기방법 예시 >

< 보내는사람 > 서울 중구 소공동 000번지 000백화점 1 0 0 - 0 7 0 상품안내서 우편물 (환부불필요)	서울중앙우체국 요금별납
< 받는사람 > S/N : 12345 서울 중구 소공동 00아파트 00동 00호 세대주님 귀하 1 0 0 - 0 7 0	

라. 감액을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

- 1) 우편봉투에 봉합되어야 하며 우편수취함에 투합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 2)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 기재 사항은 국내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3) 우편봉투의 ‘우체국 사용란’에는 ‘상품안내서 우편물(환부불필요) 표기 (가로 5cm, 세로 2cm)
 - 4) 봉투의 첫 번째 우편물로부터 맨 마지막 우편물까지 시리얼번호(serial number)를 반드시 표기
- ※ 예) 2만통 접수 시 시리얼 번호 : SN 00001 ~ 20,000

5) 아파트 단지 동별로 구분하여 우편번호 여섯자리까지 구분 제출

마. 마케팅 종류

- 1) 우체국마케팅 : 우체국에서 마케팅하거나 고객이 직접 우편물 접수
- 2) 마케팅대행 : 지방우정청에 마케팅 대행업체로 등록한 후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의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쿠폰북 등)와 광고 전단지 등을 마케팅하여 우편물로 우체국에 접수

바. 대행수수료

- 1) 우체국 마케팅은 상품안내서 대행수수료 미지급
- 2) 마케팅 대행업체가 우편으로 접수한 상품안내서 우편물의 대행수료는 수납우편요금의 10% 지급

2. 상품안내서 우편요금

가. 우편요금 : 통상우편 규격외 우편요금

나. 감액률 : 1회 총 접수물량에 따라 차등적용

1권역 1회 총 접수물량	감액률
5,000통 이상 ~ 10,000통 미만	53%
10,000통 이상 ~ 30,000통 미만	55%
30,000통 이상 ~ 100,000통 미만	57%
100,000통 이상 ~ 300,000통 미만	59%
300,000통 이상	60%

- 1) 지방우정청 관할 3개 총괄우체국을 하나의 접수권역으로 1회 총 접수 물량에 따라 감액률 차등적용
- 2) 우편물 발송계획서보다 실제 접수물량이 적어 높은 감액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부족금액만큼 발송업체에 추가 금액 징수

다. 요금납부 : 요금별납(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3. 마케팅 대행업체

가. 등 록

- 1) 상품안내서 우편물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우정청에 「마케팅 대행업체 등록 신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 마케팅 활동권역은 등록한 지방우정청이 관할하는 5급 이상 우체국 (직접 배달할 우체국)에 한 함
- 3) 동일 마케팅 대행업체는 모든 지방우정청의 마케팅 대행업체로 등록 가능

나. 자격정지

- 1)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접수실적이 없을 경우
- 2) 우편물 발송계획서와 상이하게 접수한 경우(접수물량, 동일자 미접수) 등
- 3) 원청업체로부터 마케팅한 상품안내서를 직접 배달하는 경우
- 4) 상품안내서 우편물 및 우체국 별납인이 인쇄된 봉투를 상품안내서 우편물 발송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5) 마케팅 대행업체로써 자격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 우편물 접수

- 1) 대행업체는 우편물 접수 1일전까지 해당 지방우정청에 「상품안내서 우편물 발송계획서 및 확인증(붙임2)」를 팩스로 제출
- 2) 우편물 발송계획서보다 실제 접수물량이 적어 높은 감액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부족금액만큼 발송업체에 추가 청구

부 칙

이 공고는 2011. 12. 2.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11-55호 (2011. 9. 30.)는 폐지한다.

수신 : ○○ 지방우정청

1. 우편물 발송계획서(총괄)

발송업체명		대행 업체	등록번호	
계약승인번호			업체명	
접수일자	년 월 일		연락처	
1권역 1회 총 접수물량		우편물 내용		
감 액 률	5천통 이상 53% / 1만통 이상 55% / 3만통 이상 57% / 10만통 이상 59% / 30만통 이상 60%			

2. 발송우편물 세부 배달지역 및 시리얼 번호

배달국명	행정동명	아파트 배달지역			시리얼 번호
		아파트명	동	배달 세대수	
계					

3. 권역별 우편물 접수 확인증

① 접 수

우체국명	○○우체국	우체국 확인란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일부인)
접수물량	통	
수납금액	원	

② 접 수

우체국명	○○우체국	우체국 확인란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일부인)
접수물량	통	
수납금액	원	

③ 접 수

우체국명	○○우체국	우체국 확인란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일부인)
접수물량	통	
수납금액	원	

붙임 : 발송업체 우체국 회원가입신청서 1부.(기 가입된 고객은 생략)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 ○ ○ ○ (인)